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2018. 12. 18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1. 안전명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2. 심사경과

의안 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236	2018.10.17.	2018.10.29.	제284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8.12.18.)	원안 동의

3. 제안설명 요지(권기욱 도시계획국장)

□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(안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 요 경 과 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 원 (m)								
기 정	대 로	2	25	30~ 40	주 간 선 도 로	10,000	성 동 교 남 단	대 로 2-26 교 점	일 반 도 로	-	내 무 부 고 시 23호 (52.3.25)	아 차 산 로
변 경	대 로	2	25	20~ 40	주 간 선 도 로	10,000	성 동 교 남 단	대 로 2-26 교 점	일 반 도 로	-		

□ 입안사유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대로2-25호선(아차산로)에 대하여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폭원축소 및 선형을 변경 결정코자 함
- B=30m → 20~25m (L=862m)

□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 : 준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용도지구 : 역사문화미관지구

□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

- 열람기간 : 2018.01.11. ~ 01.25. (14일간)
- 재열람기간 : 2018.07.26. ~ 08.09. (14일간)
- 공고게재 : 일간신문(세계일보, 아주경제, 문화일보, 매일경제), 시보,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재
- 의견청취결과 : 의견없음

□ 관련부서(기관) 협의

- 협의기간 : 1차 2018.01.11. ~ 01.25. (14일간)
2차 2018.07.26. ~ 08.09. (14일간)
- 협의결과 : 의견없음

□ 교통성검토

- 현재 이용 중인 아차산로의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없음

□ 환경성검토

- 도로 신설 없이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생태면적, 녹지 훼손, 비오톱 등의 변화는 없음

□ 기 타

○ 재원조달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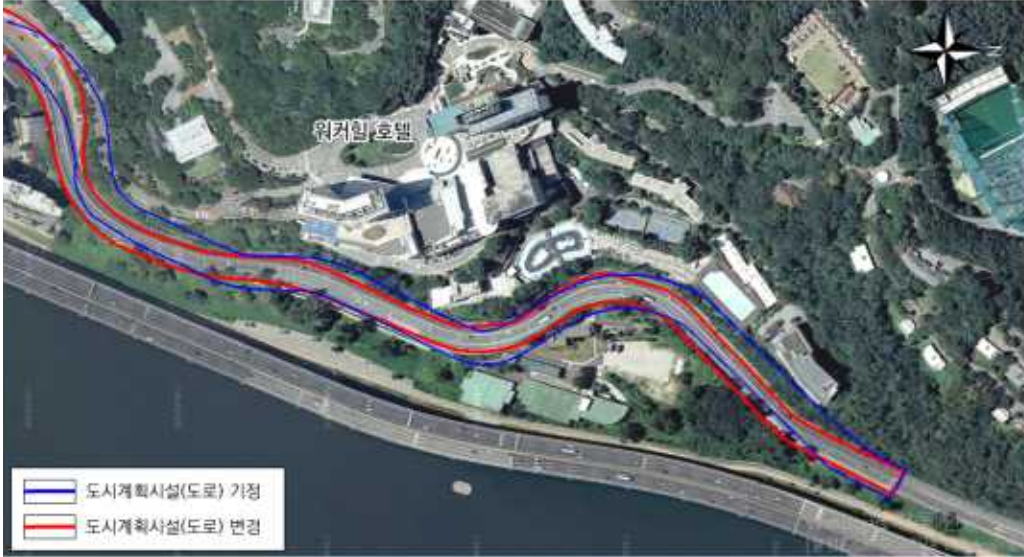
- 해당없음

○ 추진경위

- '52.03.25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내무부고시 제23호)
- '17.11.21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시의회 보고(원안동의)
 - * 자연환경훼손, 물리적 설치곤란, 과도한 재정소요 등으로 일부해제
- '18.01.11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 변경 결정(안) 열람공고
 - * 의견없음
- '18.07.26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 변경 결정(안) 재열람공고
 - * 의견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의견청취안은 아차산로 일부 구간의 폭원을 축소하고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2018년 10월 17일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(도로, 대로 2-25호선)인 아차산로 중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워 장기미집행된 구간(서울 그랜드 워커히일대(862m))으로서, 현황도로의 폭원 및 선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.
 - 대상지 구간(워커히호텔~구리 시계 구간, L = 862m) : 폭원 축소(30m(왕복6차선) → 20~25m(왕복4차선)) 및 현황도로 선형 반영

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‘법’) 및 시행령에 따라 1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(이하, 장기미집행시설)2)의 현황

1) 법 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
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시행령 제42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.
 1.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)
 2.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

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해 온 가운데, 이 사안은 일부해제 대상으로 보고되었고('15년, '17년),

아차산로의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(붙임1)를 보면, 현황 도로를 유지하더라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,

자동 실효('20.7.1.)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의 신속성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, 아차산로 도로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참고로,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50건(101.32㎞)이고, 이 중 19건은 해제(폐지), 18건은 일부해제, 나머지 113건은 존치할 계획인 가운데, 현재까지 해제 완료된 시설은 6개 소로서(해제 2건, 일부해제 4건, 붙임2), '20년 실효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.

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
3.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2) 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” 정의 (법 제48조제1항)

- ▶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함 (실시계획인가 및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)
- ▶ 부분 시행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잔여부분은 미집행시설로 봄
- ▶ 실시계획인가 없이 법 제47조에 따라 부지 매수를 한 경우 미집행시설로 봄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동의

※ 의견 제시

- 폐지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할 것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안건명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(안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25	30~40	주간선 도로	10,000	성동교 남단	대로2-26 교점	일반 도로	-	내무부고시 23호 (52.3.25)	아차산로
변경	대로	2	25	20~40	주간선 도로	10,000	성동교 남단	대로2-26 교점	일반 도로	-		

3. 입안사유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대로2-25호선(아차산로)에 대하여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곤란한 미집행 구간에 대하여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폭원 축소 및 선형을 변경 결정코자 함

- B=30m → 20~25m (L=862m)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도지역 : 준주거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용도지구 : 역사문화미관지구

5.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

- 열람기간 : 2018.01.11. ~ 01.25. (14일간)
- 재열람기간 : 2018.07.26. ~ 08.09. (14일간)
- 공고게재 : 일간신문(세계일보, 아주경제, 문화일보, 매일경제),
시보,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재
- 의견청취결과 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(기관) 협의

- 협의기간 : 1차 2018.01.11. ~ 01.25. (14일간)
2차 2018.07.26. ~ 08.09. (14일간)
- 협의결과 : 의견없음

7. 교통성검토

- 현재 이용 중인 아차산로의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
문제없음

8. 환경성검토

- 도로 신설 없이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생태면적,
녹지훼손, 비오톱 등의 변화는 없음

9. 기 타

- 재원조달계획
 - 해당없음
 - 추진경위
 - '52.03.25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내무부고시 제23호)
 - '17.11.21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
시의회 보고(원안동의)
- * 자연환경훼손, 물리적 설치곤란, 과도한 재정소요 등으로 일부해제

- '18.01.11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 변경 결정(안) 열람공고
* 의견없음
- '18.07.26 :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녹지) 변경 결정(안) 재열람공고
* 의견없음

붙 임 : 1. 관련도면 각 1부
2. 검토의견서 1부. 끝.

□ 위치도

- ▶ 위치 : 광진구 광장동 22-21번지 일원
- ▶ 규모 : B=20~40m / L=10,000m
- ▶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▶ 용도지구 : 역사문화미관지구



□ 위성사진



□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(안)도

